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2차 교육위원회)  
2018. 3. 27 (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 종 욱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개정이유

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용어 추가 및 변경(안 제3조)

-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(추가)

- (현행) 지역주민 → (변경) 충청북도민

○ 직속기관 등의 사용허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
○ 권리양도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대상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시설 사용 허가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,
  
- 제3조의 사용대상에서 ‘지역주민’을 ‘충북도민’으로 변경하고,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용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용대상을 확대하여 기관 운영의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,
  
- 제9조 사용시설 운영 공개와 제10조 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권리 양도 금지 사항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정이라 판단됨.
  
- 다만,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은 우선적으로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직원의 연수, 복지증진이 기관 설립과 운영의 근본 취지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, 조례 개정에 따라 기관별로 기관 시설 사용 절차와 운영 방법 등 종합적인 세부 규정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